

7.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3.1조
배경과 목적**

1.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의제 21, 2002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및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2006년 UN 경제사회이사회 각료선언(이하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2006년 각료선언”이라 한다)을 상기하며, 양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 목적이 양 당사국의 무역관계의 모든 수준에 통합되고 반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2. 양 당사국은 경제발전,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강화적인 구성요소라는 것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접근방법의 일부로서 무역 관련 사회 및 환경 문제에 관한 협력의 혜택을 강조한다.
3.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노동이나 환경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이 장에서의 그들의 의도가 아니며, 제1항과 제2항의 문맥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무역관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임을 인정한다.

**제13.2조
적용범위**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제13.1조제1항 및 제13.1조제2항의 문맥상 노동¹ 및 환경 문제의 무역 관련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양 당사국에 의하여

¹ “노동”이 이 장에서 언급될 때에는 노동은 국제노동기구(이하 “ILO” 라 한다) 및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양 당사국은 환경 및 노동 기준이 보호주의적 무역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지 않아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양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의 비교 우위를 문제 삼지 않아야 할 것임을 주목한다.

제13.3조

규제 권리와 보호 수준

자국의 환경 및 노동 보호 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관련 법과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법과 정책이 제13.4조 및 제13.5조에서 언급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 또는 협정에 합치되는 높은 환경 및 노동 보호 수준을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러한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3.4조

다자간 노동 기준과 협정

1. 양 당사국은 세계화로 인한 경제, 고용 및 사회적 도전과 기회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으로서 고용 및 노동에 대한 국제 협력과 협정이 갖는 가치를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상호 관심 있는 무역 관련 노동 및 고용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경우 협의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2. 양 당사국은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2006년 각료선언에 따라,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모든 국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이자 국제 협력의 우선 목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약속과, 남성, 여성 및 청년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관한 2006년 각료선언에서 합의한 양질의 일자리 의제(이하 “양질의 일자리 의제”라 한다)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3. 양 당사국은 ILO 회원국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와 1998년 제86차 ILO 총회에서 채택되고 2022년 개정된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선언과 그 후속조치에 따라 자국의 법과 관행에서 기본 권리, 즉 다음에 관한 원칙을 존중, 증진 및 실현하기로 약속한다.

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나.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

다. 아동노동의 효과적 폐지

라.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그리고

마.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4. 양 당사국은 한국과 영국이 각각 비준한 ILO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ILO 핵심협약 뿐만 아니라 ILO에 의하여 “현행” 협약으로 분류된 그 밖의 협약들을 비준하기 위하여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제13.5조

다자간 환경 협정

1. 양 당사국은 세계적 또는 지역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으로서 국제 환경 거버넌스와 협정이 갖는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관심있는 무역 관련 환경 문제에 관한 협상에 대하여 적절한 경우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2. 양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관행에서 그들이 당사자인 다자간 환경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3. 양 당사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UNFCCC"라 한다)과 교토 의정서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제13.6조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유익한 무역

1. 양 당사국은 무역이 모든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해야 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핵심 노동 기준과 양질의 일자리가 경제적 효율성, 혁신 및 생산성에 갖는 유익한 역할을 인정하고, 한편으로 무역 정책과 다른 한편으로 고용 및 노동 정책 간의 더 나은 정책적 일관성이 갖는 가치를 강조한다.

2. 양 당사국은 관련 비관세 장벽의 처리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환경 및 저배출 기술, 지속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및 실현 기반시설, 에너지 효율적 제품 및 서비스와 에코 라벨이 부착된 상품을 포함한 환경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은 공정하고 윤리적인 무역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것과 같은 체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상품의 무역을 촉진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제13.7조

법·규정 또는 기준의 적용과 집행에서의 보호 수준 유지

1.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국의 환경법 및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2.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국의 법, 규정 또는 기준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하겠다고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함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에 부여된 환경이나 노동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는다.

제13.8조

기후변화 및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1. 양 당사국은 기후변화의 긴급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UNFCCC 및 파리협정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함과, 이러한 목적의 추구에서 무역과 투자의 역할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의 즉각적인 필요성과, 파리협정 목표 이행을 위한 목표와 조치 강화의 긴급성을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UNFCCC 및 파리협정의 목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감축하고 전 세계적인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4. 각 당사국은 다음을 확인한다.

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C 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파리협정 이행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적 행동에 참여하고 협력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나. 2050년까지 국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약속

5. 양 당사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청정에너지 확대 등을 통하여 각국의 상황하에서 저탄소 경제 및 기후 회복력 있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6. 제5항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가.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청정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 자국 영역에서 저감장치를 갖추지 않은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용량 증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그리고

- 다.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탄소가격제를 유지한다.

제13.9조

오존 파괴 물질 및 수소불화탄소

1. 양 당사국은 오존 파괴 물질의 배출이 인류의 건강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오존층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달리 변형시킬 수 있음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존 파괴 물질 및 수소불화탄소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몬트리올 의정서”라 한다)² 및 몬트리올 의정서에 대한 키갈리 개정서³에 의하여 규제되는 물질의 생산, 소비, 무역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수소불화탄소의 보다 의욕적인 단계적 감축을 이행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은 또한 각국의 법 또는 정책에 따라, 오존 파괴 물질 및 수소불화탄소와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오존층 보호에 관한 조치의 개발 및 이행에서 대중의 참여 및 협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13.10조

대기질

1. 양 당사국은 대기오염이 공중보건, 생태계 건전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며, 생산, 소비 및 운송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밖의 환경 문제로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몬트리올 의정서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기존 또는 향후의 모든 개정 또는 조정에 의하여 규제되는 물질에 적용된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기존 또는 향후의 모든 개정 또는 조정에 적용된다.

이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대기오염의 장거리 이동 가능성과 대기오염의 저감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의 가능성에 주목하며, 대기질 개선 및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조율된 행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을 저감하도록 노력한다.

제13.11조

해양쓰레기 및 선박오염으로부터의 해양환경 보호

1. 양 당사국은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쓰레기를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해양쓰레기를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의 중요성과, 선박기인오염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선박에 기인한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⁴

제13.12조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1. 양 당사국은 산림제품 및 산림전용과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상품의 소비자, 생산자 및 무역업자로서의 자국의 역할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또한 2030년까지 산림 손실 및 토지 황폐화를 중단하고 역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과 지속가능한 생산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불법 벌목, 불법 산림전용 및 관련 무역을 근절하기 위하여

⁴ 당사국은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한국의 경우 「해양 환경관리법」과 같은 법에 따른 규정, 영국의 경우 「상선법」(1995)과 같은 법에 따른 규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는 조치나 조치들 또는 열거된 조치나 조치들과 동등하거나 그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제공하는 후속 조치나 조치들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노력한다.

제13.13조 생물다양성의 보전

1.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 및 보전 노력에 대한 위협에 기후변화, 육상 및 수생 침입 외래종의 국경 간 이동, 야생 동식물의 불법 포획 및 불법 거래, 서식지 훼손 및 파괴, 오염,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이용이 포함됨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이 당사자인 관련 국제 협정, 특히 「생물다양성협약」 및 그 의정서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3.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 가. 적절한 경우, 비당사자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야생동식물종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 나. 자연보호구역의 생태적 건전성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 등에 의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위협에 처해 있다고 확인된 토착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그리고
 - 다.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고 장려하며, 해양 생태계 및 해양 종의 보전을 증진한다.

제13.14조 지속가능한 농업

1. 양 당사국은 토지 및 수자원의 보호 및 보전, 생물다양성, 그리고 기후변화 완화를 포함한 것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지속가능한 농업 및 관련 무역을 증진한다. 그리고

나. 농업 생산에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제13.15조

자원 효율적이고 순환적인 경제

1. 양 당사국은 순환경제전환의 중요성,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한 부담 경감, 자원 안보의 강화 및 자재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관련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완화하는 데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 효율성 증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자원 효율성 및 순환경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데 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자원 효율적이고 순환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목표는 다음을 포함함을 인정한다.

가. 생산, 유통 및 소비를 포함한 제품 수명 전반에 걸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나. 공급망 전반에 걸친 폐기물의 감소

다. 제품 및 폐기물의 순환적 사용 증진, 그리고

라. 재사용 및 재활용이 되는 재료와 제품의 비율 확대

3.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가. 제품이 수명 종료 시, 보다 쉽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을 장려한다.

- 나. 소비자가 보다 지속가능한 선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공급망 투명성을 장려한다. 그리고
- 다.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그 폐기물의 재활용뿐만 아니라 재사용, 수리 및 재제조를 장려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매립지로 보내지는 폐기물의 양을 감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3.16조

과학적 정보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 및 사회적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때, 과학기술 정보와 관련 국제 기준, 지침 또는 권고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제13.17조

투명성

양 당사국은,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공지와 공공 협의, 그리고 민간 부문을 포함한 비국가 행위자와의 적절하고 적시적인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 및 노동 조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개발, 도입 및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3.18조

지속가능성 영향 검토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수립된 절차와 제도뿐만 아니라 각자의 참여 절차와 제도를 통하여, 예를 들어 무역 관련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이행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점검 및 평가하기로 약속한다.

제13.19조

협력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회 및 환경 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한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하면서, 부속서 13-가에 규정된 대로 협력 활동을 개시하기로 약속한다.

제13.20조

제도적 장치

1. 각 당사국은 이 장을 이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과의 접촉선 역할을 하는 사무소를 자국의 행정부 내에 지정한다.
2. 제15.2조(전문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양 당사국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3. 위원회는 부속서 13-가에 따라 수행된 협력 활동을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 협정 발효 첫 해 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회합한다.
4.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에 대한 자문 업무를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내자문단(환경 및 노동)을 설치한다.
5. 국내자문단은 환경, 노동 및 기업 단체와 그 밖의 관련 이해당사자를 균형 있게 대표하도록 독립적인 시민사회 대표 단체들로 구성될 것이다.

제13.21조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1. 각 당사국의 국내자문단 위원들은 양 당사국 간 무역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을

포괄하는 대화를 하기 위하여 시민사회포럼에서 회합할 것이다. 시민사회포럼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1년에 한 번 회합할 것이다. 양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 후 1년 이내에 시민사회포럼의 운영에 관하여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결정으로 합의한다.

2. 국내자문단은 제13.20조제5항에 규정된 대로 관련 이해당사자를 균형 있게 대표하도록 자신의 위원들 중에서 대표를 선출할 것이다.

3.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에 관한 최신 정보를 시민사회포럼에 제출할 수 있다. 시민사회포럼의 견해, 의견 또는 결정은 직접 또는 국내자문단을 통하여 양 당사국에 제출될 수 있다.

제13.22조 정부 간 협의

1.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제13.20조에 언급된 국내자문단의 의견을 포함하여 이 장에서 제기되는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협의 요청서를 전달한 후 신속하게 시작된다.

2. 양 당사국은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모든 시도를 한다.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과 ILO 또는 관련 다자간 환경 기구 또는 기관의 업무 간에 협력과 일관성을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이 ILO 또는 관련 다자간 환경 기구 또는 기관의 활동을 반영하도록 보장한다. 관련된 경우, 양 당사국의 합의를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이러한 기구나 기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이 사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그 사안의 검토를 위하여 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속하게 소집되고 그 사안의 해결책에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해결책은 공개된다.

4. 위원회는 한쪽 또는 양쪽 국내자문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자문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내자문단은 또한 자체 발의로 의견을 그 당사국이나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3.23조

전문가 패널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어느 한쪽 당사국은 제13.22조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전달된 90일 후 정부 간 협의를 통하여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않은 사안의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전문가 패널에 입장제출을 할 수 있다. 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 전문가 패널은 어느 한쪽 당사국, 국내자문단, 또는 제13.22조에 규정된 국제기구로부터 정보와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 패널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으로부터 2개월 내에 소집된다.

2.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출된 전문가 패널은 이 장을 이행하는데 전문성을 제공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전문가 패널은 마지막 전문가의 선출로부터 90일 내에 양 당사국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에 관한 전문가 패널의 자문이나 권고를 수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전문가 패널 권고의 이행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의하여 점검된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양 당사국의 국내자문단에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비밀정보와 관련해서는 부속서 14-나(중재절차 규칙)의 원칙이 적용된다.

3. 이 협정의 발효 시에, 양 당사국은 전문가 패널의 의장 역할을 할 비당사국 국민 최소 5명을 포함하여,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최소 15명의 명부에 합의한다. 그 전문가들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나 국내자문단에 참여하는 단체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이들과 관계가 있거나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다. 각 당사국은 전문가 패널 설치 요청의 접수부터 30일 내에 전문가 명부에서 1명의 전문가를 선정한다. 어느 한쪽 당사국이 그러한 기간 내에 자국의 전문가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전문가를 선정하지 못한 그 당사국의 국민 1명을 전문가 명부에서 선정한다. 선정된 2명의 전문가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의장을 결정한다.

제13.24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부속서 13-가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1. 양 당사국은 제13장의 목적 달성을 증진하고 그에 따른 자국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협력 분야에 관한 예시적 목록을 수립하였다.

- 가. 양 당사국이 수행하는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를 고려하여, 이 협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과 이를 강화, 방지 또는 완화할 방법에 대한 견해의 교환
- 나. 특히, WTO, ILO, 국제연합환경계획 및 다자간 환경협정을 포함한,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또는 환경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 다. ILO의 핵심 및 그 밖의 협약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간 환경협정의 기준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 라.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침의 효과적 이행과 후속조치, 공정하고 윤리적인 무역, 에코 라벨부착을 포함한 민간과 공공의 인증 및 라벨부착제도, 녹색공공조달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 교환과 협력
- 마. 환경 규정, 규범 및 기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의 교환
- 바. 양자 간 및 국제 포럼 등에서의 환경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협력
- 사. 세계 탄소시장과 관련된 회복탄력성 문제, 무역이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방안, 그리고 재생 에너지 및 저탄소 에너지와 전기차를 포함한 청정 운송과 같은 저탄소 기술 및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는 수단을 포함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제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력
- 아. 오존 파괴 물질, 수소불화탄소 및 대기질과 관련된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한 협력

- 자. 선박에 기인한 해양환경 오염 및 해양쓰레기 근절에 대하여,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한 협력
- 차. 육상 및 해양 생태계와 생태계 서비스 보호를 포함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하여 그리고 바이오 연료와 관련된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한 협력
- 카.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을 증진하는 무역 관련 조치에 관한 협력
- 타. 산림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관리, 산림제품의 지속가능한 생산, 산림전용과 관련된 상품의 지속가능한 생산 증진과 불법 벌목, 불법 산림전용과 관련 무역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포함하여 산림전용 및 토지 황폐화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 관련 조치에 관한 협력
- 파.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하는 정책의 개발 및 이행에 관한 협력
- 하. 폐기물을 감축하고 재사용 및 재활용을 증진하는 정책 및 관행을 포함하여, 자원 효율적이고 순환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방안에 관한 협력
- 거. 세관협력을 포함하여 다자간 환경협정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 너. 무역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노동시장 조정, 핵심 노동기준, 노동통계,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 사회적 보호와 사회적 포용, 사회적 대화와 양성평등 간의 상호 연계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양질의 일자리 의제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 더. 다자간 환경협정과 국제무역규범 간의 관계에 관한 견해의 교환, 또는
- 러.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환경 또는 노동 협력

2. 양 당사국은 그들이 개발한 협력 활동의 적용과 혜택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